

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반영
나.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 정비, 중복 조항 삭제, 용어 정비를 통한
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
다.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, 중복 조항 삭제, 용어 정비
(안 제1조, 제6조, 제13조, 제19조)
나.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(제22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14조, 제21조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다. 합 의
1) 기획감사담당관(예산담당, 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
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189호
 - 가) 예고기간: 2019. 9. 6. ~ 2019. 9. 24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: 붙임

5. 본 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상위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반영하며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, 중복사항 삭제, 용어 정비를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